

공장설립 제도와 규제개선

목 차

I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

II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

III

공장설립 동향과 특징

IV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I.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



1.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

```

graph LR
    A[공장설립지원팀] --- B[5개 지역본부]
    A --- C[지원센터]
    A --- D[기업이전지원센터]
    B --- E[ ]
    style E fill:none,stroke:none

```

서울센터	원주센터	수원센터	천안센터	구미센터	청주센터	창원센터	울산센터	광주센터	전주센터
서울 인천	강원도 경기북부	경기 남부 서부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충북	부산 경남	울산 경남 동부	광주 전남	전북

1.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 □ □ □ □ □ [지방, 농공단지, 개별입지]

□ □ □ □ □ □□□□□□□ □ ('07 ~ '07년)

연도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 (천 명)
97년	132
98년	770
99년	1364
00년	1344
01년	977
02년	1091
03년	1177
04년	1423
05년	1474
06년	1505
07년	1838

1

[illegible]

☐ ☐ ☐ ☐ ☐ ☐ ☐ ☐ ☐ ☐ ☐ ☐ ☐ ☒☒☒ ☐ (민간컨설팅 의뢰시 2백만원)

1

☐ ☐ ☐ ☐ ☐ ☐ ☐ ☐ ☐ ☐ ☐ ☐ ☐ ☐ ☐ ☐ ☒ ☒ ☒ (법정기간 20일)

[illegible]

1.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

[illegible]

□ □ □ □ □ □ □ □ □ □ □ □

□ □ □ □ □ ('07. 12말)

공장 등록	접속건수	제증명 발급
124,698개사	722,141건	521,824건

1

1

[illegible]

26 - 5

1. 공장설립지원센터 개요

II.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



1. 공장설립 제도

II.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 · 증설 · 이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의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 · 등록변경 신청, 산업단지 입주계약,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모두 포함

* 공장 : 건축물,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공장설립 유형



1. 공장설립 제도

II.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

외국의 공장설립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대 만	일 본	미 국
공장설립 제도	공장설립승인제 [산집법] *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등기허가제 [공장관리지원법] * 일부 제한적 적용	특정공장의 신고 [공장입지법] * 부지 9천㎡, 건축3천㎡ 이상	-
토지이용	4개 용도지역 구분 공업지역, 관리지역 활용, 공장규모별 규제	도시지역, 비 도시지역 구분 * [도시]공업지역 [비 도시]정종건축용지	5개 용도지역 구분 도시, 농업, 산림, 자연공원, 자연보전(개별법 제한)	용도지역제 운용 * 용도변경을 통해 공장설립(용이)
환경규제	사전환경성검토, 배출 시설별, 업종별 규제	1만㎡ 이상 환경평가	100ha 이상 환경평가 개별 공장별 사후규제	엄격하게 규제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에서 승인]
시사점	사전영향제도 및 공장규모, 업종별 제한	규모에 따른 제한없음 환경평가 제한적 실시	소규모 공장에 대한 입지, 환경 규제 완화	포괄적으로 적은 규제, 환경이외는 쉬운 공장 설립 [업종 규제 없음]

2. 공장설립 절차

II.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

토지용도별 공장설립 가능 여부

용도지역		지정목적	공장설립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
	상업지역	상업 또는 업무편익증진을 위한 지역	△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	○
	녹지지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곤란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필요하나 농림지역 곤란	△
	계획관리지역	제한적 이용개발, 계획적체계적 관리 필요	○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X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이 필요한 지역	X

2. 공장설립 절차

II.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

입지 유형별

구분	일반단지	산업단지
특징	· 각종 조세 및 금융 지원 혜택 · 대규모 단지로 기반시설이 양호 · 공동방지사설 설치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가 용이 ·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가 용이	· 필요한 시기와 원하는 장소에 공장설립 가능 ·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 확보 가능 · 이전 및 증설이 용이
단점	· 단지개발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필요한 용지를 적기·적소에 확보하기 곤란 ·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음 · 계획단지로 향후 사업확장 곤란	· 공장설립 관련 허가절차가 복잡 · 입지여건(도로·용수 등)이 취약 · 산업기반시설과 교육·문화 등 생활편익시설 등이 취약 · 산재된 개별공장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곤란

2. 공장설립 절차

II. 공장설립 제도와 절차

진행절차

사전검토단계

- 공장설립 희망자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공장의 규모, 업종 등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 필요
- 주요 검토사항 : 제조업 해당여부, 공장의 규모, 환경 배출시설 설치여부, 첨단산업 해당여부 등



공장설립 승인 절차

- 계획입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지계약을 체결 (별도의 승인 절차 불필요)
- 개별입지는 부지의 특성, 자격, 업종 및 규모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따라서 승인 여부 결정
- 토지이용 관리체계는 용도를 사전에 정한 후 이에 따른 적합성(허용 여부)을 판단함

공장설립 진행절차



III. 공장설립 동향과 특징



III. 공장설립 동향

[illegible]

- □ □ □ □ □ □ □ □ □

-
- | Year | Number of Employees (thousands) |
|------|---------------------------------|
| 01년 | 7318 |
| 02년 | 9951 |
| 03년 | 7813 |
| 04년 | 8013 |
| 05년 | 5925 |
| 06년 | 7771 |
| 07년 | 7205 |

26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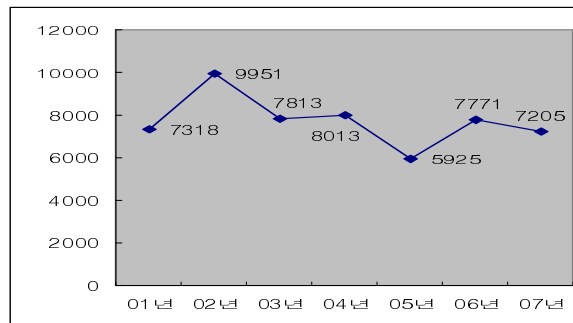
2. 공장설립 특징

Ⅲ. 공장설립 동향과 특징

공장설립 특징

□ □ □ □ □ □ □ □ □ □ □ □ □ □

- 2002년 ↑
- 2003년 ↓
- 2005년 ↓
- 2006년 ↑



〈공장설립수〉



〈경제성장률〉

□ □ □ □ □ □ □ □ □ □ □ □ □ □ (개별입지)

- 2002년 없음 ↑
- 2003년 신설 ↓
- 2006년 완화 ↑



〈전국 공장설립수〉



〈관리지역 공장설립수〉

2. 공장설립 특징

III. 공장설립 동향과 특징

공장설립 특징

규모별 (1천㎡ 미만) (1천㎡ 이상) (5천㎡ 이상) (1만㎡ 이상)

구 모 별	1천㎡ 미만	1천㎡ 이상	5천㎡ 이상	1만㎡ 이상	계
업체수(개사)	82,295	35,278	4,078	3,047	124,698
비 율(%)	66.0	28.3	3.3	2.4	100

규모별 (첨단업종, 임대공장 등 부지 소요가 적은 업종 증가)



< 첨 단 업 종 >



< 임 차 업 체 >

IV.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1. 공장설립 주요규제

IV.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공장설립 및 토지이용 관련 주요 규제

공장설립은 토지이용, 환경, 재해 등 관련 법률과 상호 밀접한 관계

- 토지 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근간이며 그외 법령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서 규제
- 특히 관리 지역은 사전 절차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 재해 영향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치도록 의무화

규모별로 공장설립에 대한 차등규제 (신규 규제)

- 규모별 공장 설립에 대한 차등 규제 실시
(2003년 1월, 난 개발 방지, 1만 m² 미만 원천 제한)
- 규제완화 차원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 허용 ('05. 9, 1만 m² 미만)
 - 파생규제 발생(사전환경/재해영향 검토)과 79개 공해업종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농지 및 산지관리법

환경관련 법규

2. 공장설립 애로 및 문제점

Ⅳ.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3.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Ⅳ.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개별공장의 입지공급 원활화

- 계획관리 지역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완화 (1만 m² 미만)
- 관리지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완화
-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개발계획 기준 완화

환경·재해 관련 규제의 합리화

- 소규모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 수질오염총량제 개선
- 상수원 보호구역의 입지 제한 완화

상호 보완

-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
- 규정 정비 및 비효율적 행정 개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개선

- 공장설립 민원해결을 위한 음부즈만 제도의 운영
- 공장설립 관련 지원서비스 강화

공장설립 지원체계 개선

3.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IV.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계획관리 지역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완화 (1만 m² 미만)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 시행, 2005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공장설립완화 조치가 오히려 공장 설립 어려움 가중
 - 업종 제한 추가 지정,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추가

기업 애로사항

- 기업 인쇄 회로판을 제조하는 A사가 관리 지역에서 공장 설립 추진
- 동 규정에 의거 공장 설립 실패

개선방안

-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의 업종별 입지 제한 완화
 -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
 - 환경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제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면제('08년 1월 개선)
 - 토지 형질 변경 사업에 관련된 법규 내 모순 해소
 - 허가 기관에서 관리

3.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IV.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관리지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토지형질 변경에 의한 개발(관리지역) : 3만 m²이내만 허용하나 연접하여 추가개발 시 하나의 개발로 간주함에 따라 애로사항 발생
- 연접개발 규정 미비로 인한 자의적 해석 허용

기업 애로사항

- 기존공장(11,000m²)에서 증설목적으로 추가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기존 인근 축사(1만 m²)가 있어 함께 면적이 3만 m²를 초과로 공장증설 포기

개선방안

-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기업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접제한 완화
- 기존 집적지역에 연접하여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확충 자원 부담 유도하여 허가
- 연접개발 제한 규모 확대 및 적용대상 사업 완화
 - 현행 3만m²을 10만m²로 확대
 - 사업목적이 동일, 연속성이 없는 경우 규제

3.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IV.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개발계획 기준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지역에서 3만 m²이상 공장 설립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녹지 및 도로율 확보가 필요함
 - 공장용지 활용 저해 및 불필요 도로개설 문제점 발생(산업단지 대비 1.5~2배 이상 낭비)

기업 애로사항

- 아산시에 소재한 B사 경우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과정에서 녹지, 도로, 의무기준으로 실면적이 축소

개선방안

- 산업단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계획 기준완화
 - 산업형 지구단위를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완화
[녹지율 : 5~7%, 도로확보 : 8% 이상, 건폐율 : 60%→80%, 용적률 : 150%→200%로 상향조정]
- 실수요기업의 단일 공장인 경우 의무확보기준 예외 인정(개별법에서 규정)
 - 단일공장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부지내 도로비율 적용 제외

3.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IV.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 내의 소규모 공장 (1만 m² 미만) 설립 허용하면서 사전 환경성검토 의무 부과(2005년 9월)
 - 개별법과 중복됨, 규모에 무관한 일괄규제 불합리
 - 사업자의 비전문성으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비용 및 기간 증가됨

기업 애로사항

- D사(이전부터 1만 m² 미만 공장운영)의 경우 인접부지 공장증설 승인 신청하였으나 2005년 9월 이후 사전환경성검토로 공장설립 기간지연
 - 비용 : 15 ~ 30백만원
 - 기간 : 50일 지연

개선방안

- 소규모 공장에 대해 기업부담 완화
- 환경성 검토항목을 필요 최소항목으로 국한하되, 작성양식 표준화로 부담 경감
- 경미한 사항, 개별법에 의한 중복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협의 배제

— — — — —

